#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재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777

발의연월일: 2024. 9. 6.

발 의 자:이재관·이병진·소병훈

복기왕 • 박용갑 • 오세희

송재봉 • 박홍배 • 윤준병

강준현 · 고민정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등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정당 가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.

한편,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 가입·관여 및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「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을 마련하고 있음.

이에 「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의 취지에 맞춰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당가입을 허용하려는 것임(안 제 22조제1항제1호 단서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774호), 「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778호), 「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776호)의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##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중 "교원"을 "교원 및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벌칙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)	제22조(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)
①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	①
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	
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	
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	
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	
당원이 될 수 있다. 다만, 다음	,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(공	1
무원의 구분) 또는 「지방공	
무원법」 제2조(공무원의 구	
분)에 규정된 공무원. 다만,	
대통령, 국무총리, 국무위원,	
국회의원, 지방의회의원, 선거	
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	
단체의 장, 국회 부의장의 수	
석비서관 • 비서관 • 비서 • 행	
정보조요원, 국회 상임위원회	
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• 윤리	
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	
조요원, 국회의원의 보좌관・	
비서관·비서, 국회 교섭단체	

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,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·행 정보조요원과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(교직원의 구분)제1항 ·제2항에 따른 <u>교원</u>은 제외 한다.

2. ~ 4. (생 략)

② (생 략)

<u>교원 및 「공</u>
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
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
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
있는 공무원
○ ~ / (청해고 가으)

- 2. ~ 4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